

법리논쟁 '잇박자' ... 교권추락 염려

총무원장 사퇴... 항소권 포기 이후

도건 직무대행 존재 놓고 양측 주장 팽팽

"물리적 충돌 우려... 대화의 길 찾아야"

고산스님의 항소권 포기과 총무원장직 사퇴, 이에 대해 정화회의측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직무대행 유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후 사태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무원측은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 고산스님이 5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하고, 항소권을 포기함에 따라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가 지명한 총무원장 직무대행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총무원장 직무대행지 가져분신청 판결문에서 "고산스님은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판결 확정시까지 조계종 총무원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 직무집행정지 기간중 도건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한편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는 4일 판결확정명령을 총무원측에 발급해준데 이어 정화회의측이 제기한 판결확정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각하했다.

정화회의는 고산스님이 항소권을 포기한 직후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따

라서 직무대행 도건스님 선임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정화회의는 5일 고산스님이 임명한 총무원 집행부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총무원측 고문변호사인 양영태변호사는 "전부승소(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이 같은 경우)한 원고가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원고의 항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정화회의는 항소 각하 여부는 고등법원의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며, 따라서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법리를 펴고 있다. 당연히 직무대행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정화회의측 소송대리인인 황해진변호사는 "항소권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은 피고에게만 해당되며, 만일 상급심이 각하시킨다 해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때까지는 직무대행의 효력이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 이익이 없을 때는 승소한 자라도 항소할 수 있다"며 "피고가 항소를 포기해 부득이 청구취지를 변경, 항소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이같은 법리논쟁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전부승소자는 항소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변호사는 "전부승소한 원고가 청구취

지를 변경해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무튼 때마침 법리논쟁은 고등법원의 항소 각하 또는 유지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가시적이지 않지만, 교구분사와 주요 사찰의 분쟁 또 총무원 청사를 두고 벌어질지도 모르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외면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서로 정통성과 사법부의 판단을 앞세우며 한치도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대화를 통한 해결은 가능성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불자들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촉구, 불교의 위상 추락을 염려한 여론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극한적인 충돌을 양측이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성운·김재경 기자 (swjung@buddhania.com)



고산스님은 4일 열린 143회 임시총회 인사말을 통해 "임치단결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법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도건스님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대행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총회 · 교구본사, 법통수호 결의

총무원 움직임

조계종 교구본사지회의와 중앙총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서울지법 민사 42부의 판결을 반대하며, 법통수호를 위한 대책위에 참여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통도사를 제외한 23개 본사지회들과 재적 78명 중 65명이 참석해 4일 열린 본사지회의와 143회 임시총회에서는 종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사지회의와 중앙총회는 회의에서 △종단사태 수습 때까지 순선수법하고, 본사지회는 총무원장사 수호를 위해 본사대중 파견 △중회의원들은 5개조로 나눠 총무원청사에 상주 △12일 사부대중 결기대회 적극 동참 △각 사찰에 재판부·행정부 규 단 현수막 게시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제

12일 사부대중 결기대회

택했다. 또 12일 열리는 사부대중 결의대회를 "불교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결기대회"로 명칭을 바꿔 치르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5일 불교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총무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원택스님이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고산스님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영태변호사는 "가처분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권 포기로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정성운 기자

도건스님 총무원장 직대 수락

정화회의 움직임

법원으로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도건(원로회의 의원)스님은 4일 통도사 감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무대행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도건스님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대화와 수습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종단의 안정과 화합 △중도들의 신망받는 종단체제 확립 △문준과 과벌을 초월한 의견 수렴 △과감한 현정(顯正)조치 시행 △사부대중이 함께 의논하고 만들어가는 종단공동체 확립 등 5대 원칙을 천명했다.

도건스님은 이날 현근스님을 조계사 주지로, 도각스님을 총무원장 사서실장에, 원희스님을 대변인으로 각각 임명했다. 5

7일 비상대책위 구성

일에는 "고산 총무원으로부터 징계받은 스님 및 해임된 스님은 99년 10월5일자로 원천무효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화회의측 측은 스님들로 구성된 '조계종 정화회사 대응연합'은 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삼일대표로 전 봉은사 주지 성문스님을 선출하는 등 9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정성스님은 5일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 항소한데 이어 7일에는 원택 만성스님등 총무원 집행부를 상대로 임명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정화회의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김재경·최미희 기자 (jgkim@buddhania.com)

■ 세속법 의존 언제까지...

승단 自淨능력 회복 급선무

불교 내부의 문제가 세속법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승승한 부처법법을 뒤로 재쳐놓고 특 하던 소송을 제기해 세속의 잣대로 불교 일을 가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세속법에 의한 소송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0년대 '비구-대처분쟁'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조계종 종단분규는 어김없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설레를 낳았다. 종단분규 전문변호사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며, 종단의 대표

변호사들도 "종단 일의 변호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말한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종교단체 등 특수한 집단에 관계된 판결의 경우 사법법을 변용해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 사회의 법이론'이 있다"며 종교의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한 판결을 당부했다.

사회법 의존 현상에 대해 한 불자는 "승가내에 세속적 욕심이 있는 스님들이 부처법법을 핑계치고 사욕만을 채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승단의 자정회복을 촉구했다.

자초한 일이지만 사법부의 신중치 못한 비판하는 의견도 많다. 또다른 한 불자는 "법원이 천주교의 추기경이라면 사소한 절차를 문제삼아 총무원장 부존재 판결을 내리겠다는"고 목소리를 높여 서울지법 민사42 재판부를 비판하고 "이는 한국의 최대 종단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불교 스스로 자존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는 안된다"는 뼈아픈 가르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정 노력과 함께 부처법법을 통한 종법에 충실히 반영하는 제도적 보완, 종헌·종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의 확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여 한다.

정성운 기자

"부처님법이 최상법" 의식전환 필요

자신 총무원장까지 사법부에 의해 좌우되는 수치를 겪고 있다. 조계종의 최고 어른인 정통을 소송 대상에 올린 적도 있었다.

조계종 승려법 46조에는 종단 내 조정기관 또는 관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당국에 민정사 제소를 일으키면 벌금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허위 사항을 유보 조작하여 고의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불교 일을 세속의 잣대로 좌우하지 말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

창피하고 부끄럽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잠잠해지면 또 일어나고 잠잠할려면 또 일어나는 사태이니 이전 지겹다 못해 창피하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다투는 두 집단은 이미 우리 대중들에게 가치를 혼동시키고 대중의 마음을 고동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보기에 딱한 작태를 연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AP통신이 선정한 세계 100대 보도사진 가운데 조계종사태를 수습키 위해 출동했던 전경들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부끄러움은 나. 부끄러움은 나.

(식)이라고 한다. 지금 그들이 다투는 작태는 지혜가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얌이 있는 행동인가. 속가의 눈으로 보기에 어느 것도 아니다. 스스로 얌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작태라면 이미 영적 삶을 추구하는 원래의 목표는 상실한거나 다름없다. 영적 삶의 추구를 소홀히 하는 것만으로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더하여 대중을 괴롭히는 일을 다반사로 한다면... 또한한 길이 반성하고 참회할 일이다. 법률적인 판단은 속인이 즐겨쓰는 상식이지 스님들이 즐겨 쓸 상식은 아니지만 지혜와 얌을 잃은 민사상태의 스님들로서는 속인의 잣대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 판단을 논리와 상식으로 보면서 깊은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더이상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 승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과거의 사건들이나 선인전 그리고 편협과 주장들과 숨겨진 의도등을 버리고 인내성 있는 대화로 빨리 수습의 길을 잡아가기 바란다. 개인개인 마다의 정진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이 정진은 마음을 닦는 일이지 육체적으로 돌진하는 일이 아니다. 불교 본래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대중의 기대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된다.

목어

부끄러움

이근후(이대대대 교수·본지 논설위원)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직무대행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홍인곡	이시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정예일	이시	보국불교	열불종 총무원장	이정봉
부회장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전운덕	이시	대한불교	임승종 총무원장	김예정	이시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윤일오
부회장	대한불교진각종 총무원장	김성초	이시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주운경	이시	대한불교	삼륜종 총무원장	이예공
부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김월서	이시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정경식	이시	대한불교	열반종 총무원장	김예곡
부회장겸사무총장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이흥파	이시	대한불교	원웅종 총무원장	정	이시	대한불교	미타종 총무원장	이월정
사무국장		민법현	이시	불교총	지종 총무원장	충지희	이시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신예인
			이시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송무진	이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어원택
			이시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진남정	이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부장	정양신
			이시	대한불교	진언종 총무원장	손금광	이시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이지성
			이시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이법덕	이시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김국성
			이시	대한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이효성	이시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원장	김희정
			이시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이대희	김시	한국불교	태고종 교무부장	편백운
			이시	대한불교	일부선교종 총무원장	유정승	김시	대한불교	진각종 재무부장	손수성
			이시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한학봉				

부설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
▶ 대표전화 : (02)732-4885
▶ FAX : (02)737-7872
◆ 인터넷 홈페이지 www.mahayana.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2층(인터넷 홈페이지 www.mahayana.or.kr)
대표전화 : (02)732-4885 / FAX : 737-7872